

“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”

특정감사 결과 보고

- 외부강의 · 회의 등의 신고 -

2015. 8.



감 사 실
한국국토정보공사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목적	1
2. 감사대상 및 범위	1
3. 감사기간 및 인원	1
4. 감사중점	1
5. 감사방법	1
II. 감사결과	2
1. 외부강의·회의 신고 및 복무관리의 적정성	2
2. 감사결과 제도개선 의견	3
3. 지적사항 총괄	5
4. 지적사항 요약	5
I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	5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	5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	6
IV. 기타사항	6

I 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에 따른 외부강의·회의 등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여부 자체 점검 관련 평가지표 이행
-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에 따라 외부강의·회의 등에 대한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□□, □□□□□□원, 10개 지역본부(□□□□□□원, □□지역본부, □□□□지역본부는 제외: 종합감사에서 점검)
- 2014. 7. 1.부터 2015. 6. 30.까지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실적이 있는 전 직원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: 2015. 7. 30.(목) ~ 2015. 8. 7.(금) / 7일간
- 감사인원: 국토정보직 4급 □□□

4. 감사중점

- 외부강의·회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
 - 외부강의·회의 등에 따른 복무조치^{외출, 출장, 휴가 등} 적절성
- 외부강의·회의 등에 따른 신고·승인 누락 여부
- 외부강의·회의 등의 대가 기준 준수 여부

5. 감사방법

- e-감사시스템 내 외부강의 신고·승인 및 대가 내역 추출
- ERP 내 출장명령 내역(여비 포함) 추출
- 자료 대사 후 위규사항에 대한 소명 요청

II. 감사결과

1. 외부강의·회의 신고 및 복무관리 등의 적정성

가. 외부강의·회의 등 신고의 적정성

-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·회의 등을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2014. 7. 1. ~ 2015. 6. 30. 까지 기간 중 ERP 출장명령 내역 46,830건에 대한 출장목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외부강의·회의 등을 신고하지 않고 출장한 건이 46건 있었다.

나. 복무관리의 적정성

- 2014. 7. 1. ~ 2015. 6. 30. 까지 기간 중 e-감사시스템 외부강의·회의 등록 365건을 ERP근태처리와 대조하여 출장처리가 없는 10건에 대하여 확인 한 결과 근태처리는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.

[복무관리 현황]

e-감사 시스템				ERP	확인결과
소속	성명	요청기관	강의날짜	근태처리여부	
□□□□□원 □□□□□실	□□□	□□시 □□□□원	2015-03-16 ~ 2015-03-16	X	외출처리
□□ □□□□□실	□□□	□□□□□원	2014-11-14 ~ 2014-11-14	X	외출처리
□□ □□□□□처	□□□	□□□□□단 (□□□□)	2014-08-27 ~ 2014-08-27	X	강의장소: □□□□□원
□□ □□□□□처	□□□	□□□□□청	2015-04-17 ~ 2015-04-17	X	외출처리
□□ □□□□□부	□□□	한국□□□□공사	2014-11-26 ~ 2014-11-26	X	외출처리
□□지역본부 □□□□□□처	□□□	□□□□□□청	2015-04-17 ~ 2015-04-17	X	외출처리
□□지역본부 □□□□□□처	□□□	□□□□□□청	2015-04-01 ~ 2015-04-01	X	외출처리
□□지역본부 □□□□□□처	□□□	□□대학교 □□대	2014-12-29 ~ 2014-12-29	X	외출처리
□□지역본부 □□지사	□□□	□□시청	2014-10-21 ~ 2014-10-21	X	외출처리
□□□□지역본부 □□지사	□□□	□□군청	2015-05-12 ~ 2015-05-12	X	외출처리

다. 여비수령의 적정성

-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제6항에 따라 외부 강의·회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대가를 받고도 출장여비를 중복수령 한 건이 13건 있었다.

라. 대가기준 준수의 적정성

- 2014. 7. 1. ~ 2015. 6. 30. 까지 기간 중 e-감사시스템 외부강의·회의를 등록한 365건 중 대가기준을 초과한 17건에 대하여 확인 결과 강의료 외 원고료와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임직원들은 대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.

2. 감사결과 제도개선

가. 외부강의·회의 대가 기준 현실화

- 공사 임직원이 ○○○○○○원에 강의를 한 경우 「예산집행지침」 및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외부강의·회의 대가 기준 [표 1]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나 2014년 7월 18일 「예산집행지침」이 개정되어 임직원의 내부강의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따라서 내부강의 강사료 지급을 위해 마련하였던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 “공무원 외부강의·회의 대가기준[표 2]”를 적용하여 관련 규정을 [표 3]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.

[표1] 외부강의·회의 등의 대가 기준(한국국토정보공사)

(단위: 천 원/ 1시간)

구 분	임 원	원장 및 지역본부장	2급 이상	3급 이하	비 고
상한액	300	230	120	70	원고료·여비는 미포함
1시간 초과	200	120	100	50	

※ 1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 1시간은 상한액을 적용, 이후 시간은 1시간 초과 대가를 적용 예시) 3급 직원의 2시간 대가는 120천 원

[표2] 외부강의·회의 등의 대가 기준(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)

(단위: 천 원/ 1시간)

구 분	장·차관급	과장급 이상	5급 이하	비 고
상한액	400(장관)·300(차관)	230	120	원고료·여비는 미포함
1시간 초과	300(장관)·200(차관)	120	100	

[표3] 외부강의·회의 등의 대가 기준 개정(안)

(단위: 천 원/ 1시간)

구 분	임원	2급 이상	3급 이하	비 고
상한액	300	230	120	원고료·여비는 미포함
1시간 초과	200	120	100	

※ 1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 1시간은 상한액을 적용, 이후 시간은 1시간 초과 대가를 적용
예시) 3급 직원의 2시간 대가는 220천 원

나. 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 개선

- 소속부서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자는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장을 허가
-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에 근거해 허용
 - e-감사시스템 외부강의 등록 시 반드시 공문 첨부
 - ※ 개인적인 전화나 e-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
-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
 - 해당 임직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
 - 우리 공사 기능 수행 및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
 - 기타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원)

구분	총괄 (계)	행정상조치				재정상조치		신분상조치(인원)			현지 처분	제도 개선	모범 사례
		통보	시정	개선	권고	회수	지급	징계	문책	고발			
건수 (인원)	4 (38)	1 (19)	0	0	0	1 (14)	0	0 (0)	1 (5)	0 (0)	0	1	0
금액	463,800	0	0	0	0	463,800	0						

4. 지적사항 요약

< 요약 >

- ☉ 「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제39조(외부회의.강의 등의 신고)
- ☉ 「임직원 외부강의.회의 등 업무처리요령」

- ☞ 외부강의.회의 등의 신고 소홀: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.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.
- ☞ 출장여비 중복수령: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.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출장여비를 중복수령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.

Ⅲ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원)

번호	처분사항	처분요구	조치기한	관련기관
1	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	개선	2개월	□□ □□□□실
2	외부강의.회의 신고 소홀	문책(주의)	20일	□□□□지역본부 □□지역본부
3	외부강의.회의 신고 소홀	통보	1개월	□□ 등 8개 기관
4	출장여비 중복수령	시정(회수)	1개월	□□ 등 6개 기관
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제 목	처분내역				
	조치양정	소속	직급	성명	관련지적사항
외부강의·회의 신고 소홀	주의	□□□□지역본부 □□□□□□처	국토정보직 5급	□□□	외 부 강 의 · 회의 미신고
외부강의·회의 신고 소홀	주의	□□□□지역본부 □□□□□□처	국토정보직 6급	□□□	외 부 강 의 · 회의 미신고
외부강의·회의 신고 소홀	주의	□□지역본부 □□□□처	국토정보직 5급	□□□	외 부 강 의 · 회의 미신고
외부강의·회의 신고 소홀	주의	□□지역본부 □□□□처	국토정보직 5급	□□	외 부 강 의 · 회의 미신고
외부강의·회의 신고 소홀	주의	□□지역본부 □□지사	국토정보직 2급	□□□	외 부 강 의 · 회의 미신고

IV. 기타사항

- 지적사항 처분 요구
- 「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 개정
- 「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」 개정(□□□□실)
- 외부강의·회의 신고 준수 등에 대한 문서 시달(□□□□실)

붙임: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부. 끝.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개 선 요 구

제 목 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 개정

관 계 기 관 □□ □□□□실

내 용

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“외부 강의·회의 등”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개시 전까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」에 따라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 할 때의 “외부강의 처리절차 와 e-감사시스템”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일부 직원은 e-감사시스템에 외부강의를 등록하면서 강의요청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등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였다.

따라서 외부강의 회의 출강에 대한 엄격한 통제, 공문에 의한 강의요청,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출강 허용 기준 등 「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」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의무를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.

조치할 사항 □□ □□□□□장은 임직원의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외부강의 회의 출강에 대한 엄격한 통제, 공문에 의한 강의요청,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출강 허용 기준 등 「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」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문 책 요 구

제 목 외부강의·회의 신고 소홀
관 계 기 관 □□□□지역본부, □□지역본부
문 책 대 상 자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 등 5명¹⁾
문 책 종 류 주의
내 용

「임직원행동강령」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“외부 강의·회의 등”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개시 전까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공사에서는 「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」에 따라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 할 때에는 “e-감사시스템”에 등록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.

그런데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 외 4명은 “지적행정 및 지적재조사 교육” 등에 참석하면서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.

그 결과 「임직원행동강령」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를 위반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.

1) □□□□지역본부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, 국토정보직 6급 □□□, □□지역본부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, 국토정보직 5급 □□, 국토정보직 2급 □□□

조치할 사항 □□(□□□장)은 「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」 제5조 (처분사유)에 따라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를 위반한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 외 4명에 대하여 문책(주의) 처분하고,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·회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통 보

제 목 외부강의·회의 신고 소홀

관 계 기 관 □□ 등 8개 기관²⁾

내 용

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“외부 강의·회의 등”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개시 전까지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공사에서는 「임직원 외부강의·회의 등 업무처리요령」에 따라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 할 때에는 “e-감사시스템”에 등록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.

그런데 계약직 5급 □□□ 외 18명은 “□□3D프린팅 융복합센터 TFT 자문회의” 등에 참석하면서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.

그 결과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를 위반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.

2) □□, □□□□□□원, □□지역본부, □□□□지역본부, □□지역본부, □□지역본부, □□□□지역본부, □□지역본부

조치할 사항 □□ 등 8개 기관장³⁾은 「임직원행동강령」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외부강의·회의 등에 대하여 미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
3) □□(□□□□□장), □□□□□원(□□□□장), □□지역본부장(○○○○○장), □□□□지역본부장(○○○○○장), □□지역본부장(○○○○○장), □□지역본부장(○○○○○장), □□□□지역본부장(○○○○○장), □□지역본부장(○○○○○장)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

시정요구(회수)

제 목 출장여비 중복수령 부적정

관 계 기 관 □□ 등 6개 기관⁴⁾

내 용

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제6항에 “근무시간 내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며, 내·외부 강의·강연 등에 대한 활동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” 고 되어있다.

그런데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 외 9명⁵⁾은 “□□ ICT 융합 컨퍼런스” 등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·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여비를 중복 수령하였다.

그 결과 총13회에 걸쳐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463,800원⁶⁾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□□ 등 6개 기관장⁷⁾은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 외 9명에게 「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」 제39조 제⑥항에 따라 출장여비 463,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.

4) □□, □□□□□원, □□지역본부, □□지역본부, □□지역본부, □□□□지역본부

5) □□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,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, 계약직 5급 □□□, □□□□□원 기획경영직 2급 □□, □□지역본부 국토정보직 2급 □□□, 현)전문직 □□□, 국토정보직 2급 □□□, □□지역본부 국토정보직 2급 □□□, □□지역본부 국토정보직 5급 □□□, □□□□지역본부 현)전문직 □□□

6) □□□ 38,700원, □□□ 163,500원, □□□ 60,000원, □□ 25,800원, □□□ 40,000원, □□□ 20,000원, □□□ 20,000원, □□□ 20,000원, □□□ 45,200원, □□□ 30,600원

7) □□(□□□장), □□□□□원(○○○○○장), □□지역본부(○○○○○장), □□지역본부(○○○○○장), □□지역본부(○○○○○장), □□□□지역본부(○○○○○장)